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방안 연구

A Study on Car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Based on Human Rights Perspective

손 명 동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Son Myeong-do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전문가이기에 인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속에서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치매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이해하기 위해, 인권 관점이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주는 장점과 과정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보호와 치매의 정의, 원인과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기술과 장점을 살펴보고,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Ⅰ. 서론

고령화 사회 속에서 인권 관점이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주는 장점과 과정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보호와 치매의 정의, 원인과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기술을 살펴보고, 더불어 인권관점이 주는 장점은 무엇인지와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의 보호와 치매의 정의

노인을 위한 국제선언 가운데 독립 · 참여 · 돌봄 · 자아실현 · 존엄성을 '1991 노인을 위한 UN원칙'에서 강조하고 있고, '2002 고령화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에서는 노인의 개발권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8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을 돌보는 문제가 건강관리에 새로운 과제가 될 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에게도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제이홀맨의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 고덴브르크에 사는 8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약 30%가 치매인 것으로 밝혀졌다[1]. 치매의 정의는 한번 획득된 지적기능인 기억, 인식, 추리, 판단, 학습 등의 저하에 의해 자기나 주위의 상황 판단이 부정확하게 되어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자립된 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상태를 말한다. 미국정신협회에서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장기 또는 단기 기억장애와 함께 추상적 사고의 장애, 판단력 문제, 대뇌 고등기능 장애, 성격 변화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 장애가 있으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기술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 실천이 그 과정과 실천 기술에 대해 모든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천현장에서 그 과정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들이 면접, 집단, 지역사회 복지, 계획, 기관 운영, 슈퍼비전 영역에서 인권 원칙을 반영한 접근법을 들 수 있다[2]. 우선 면접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업무 중 일부분에 해당하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또한 집단은 사회복지 전문직과 이용자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팀 회합, 행동 집단, 사례관리팀 등 여러 종류의 집단 속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며 일함을 말한다. 지역사회 복지는 인권 관점에 근거한 실천에 의하면 지역사회 복지 내지, 지역사회 과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실천이다. 즉, 비폭력적 방법, 합의적 의사 결정, 능력 상승을 다룬다. 계획은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 실천에서 매우 비판적으로 본다. 즉,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전략적 계획, 실행계획, 사업 계획, 목적 설정과 목표의 구체화, 사정 활동

등 수많은 시간과 계획을 세우는 데 소비한다고 보고,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허구이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변화의 힘이 있는 인권의 가능성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용자와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고, 그들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과 슈퍼비전은 인권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 실천에 있어서 기관 운영을 인권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실천이 되어야 하며, 기관 운영직에 있는 전문직들이 인권의 목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관 운영과정에서는 참여적이고 대화적인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만들며, 불평등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조직 내 모든 고용인들의 인권 보장을 지향하는 운영자의 운영을 강조한다. 슈퍼비전 역시 전통적으로 개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슈퍼비전에 집단을 통한 상호작용을 허용하고, 더 많은 시각이 표현되고 더 많은 지혜가 공유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인권 관점이 주는 장점

그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다양한 실천 모델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보면 문제 해결 모델, 욕구 기반 모델, 그리고 인지 행동 모델 등이 있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강조하고 있는 임파워먼트 모델, 사회 정의 모델, 시민권 기반 모델이 그 중심에 있다. 고로 인권에 기반을 두고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치매노인 돌봄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적 개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 실천적 의미의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강조되고 내재화된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자 관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학자와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인권 관점에 근거한 실천 모델, 권리 기반 모델, 인권 관점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통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권 관점은 사회복지에 내재된 욕구 기반 모델의 약점에 대한 비판을 보완한다는 점이다. 즉, 수혜적 관점이 배제되는 강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점 중 마지막 세 번째로 인권 관점에 근거한 실천은 자선(charity)보다는 자격(entitlement)을 강조하며, 실천현장에서 대상자의 권한(empowering)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Ⅲ. 결론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방안으로 엄기욱(2015)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역할"에서 제시한 제언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3]. 첫째,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존중받고 적절한 개별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사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치매 대응형 장기 요양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양보호사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은 노인 요양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양화를 촉진시켰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적어 공공의 역할이 미미한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일정 수 이상으로 정하여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함으로 시설 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요양병원이 병원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 간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여 입원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권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인인권옴부즈맨제도의 확대와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의 활동들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2015)의 노인인권지킴이단과 보건복지부(2015)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사자에 의한 명예직 활동으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에는 한계가 분명 있다. 그러므로 노인인권옴부즈맨활동을 인권 관련 전문가와 보호자를 포함시켜서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재이홀맨, 박재영 옮김,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예영커뮤니케이션, 서울, 1995.

[2] 조유향 외, 치매노인의 인권, pp. 51-77, 오월숲출판사, 광주, 2016.

[3] 엄기욱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지방 및 중아정부의 역할", 한국노년학연구, Vol. 24, pp. 51-73, 2015.